과세표준 세율 2008.12.26.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9.1.1. 이후 2010.1.1. 이후 2012. 1. 1. ∼ 2017.12.31. 2018.1.1. 이후 2023.1.1. 이후 2억 이하 11% 11% 10% 10% 10% 9% 2억 초과 25% 22% 22% 20% 20% 19% 200억 초과 22% 22% 21% 3,000억 초과 25% 24% ☞ 구 세율표(해당연도 1.1.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) 과세표준 1991 1994 1995 1996 2002 2005 1억이하 20% 18% 18% 16% 15% 13% 1억초과 34% 32% 30% 28% 27% 25% ☞ 조특법§72① 각 호의 조합법인은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(접대비 손금불산입액과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)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2022.12.31.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% 적용) \* 다만, 2015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12% 적용 ☞ 당기순이익 과세제도(과세표준) 세무조정 사항 추가(조특령§69) 접대비･기부금 외에 공정과세에 필수적인 세무조정 사항(과다경비, 업무무관자산의 유지･관리비, 차입금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, 대손금･대손충당금) 추가(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) ☞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함